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803호

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발의일자 : 2015년 10월 30일

라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4일

2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으로 시민건강국이 신설되어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(복지건강본부장)이 공석이 되어 당연직 공동위원장 직책의 재지정이 요구됨

○ 또한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참여 확대 방안 및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이 필요함

3. 주요내용

○ 식품안전대책위원의 구성요건으로 성별을 고려하고, 위촉대상을 시민으로 확대(제12조제1항, 제12조제4항)

○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, 공동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책을 하향 조정 (제12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제5항)

○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(제13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안전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 :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'15.7.1일자 시민건강국이 기존의 복지건강본부에서 분리·신설됨에 따라,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 직책의 재지정하는 등 기타 위원회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□ 안 제12조(구성) 제1항

○ "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,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**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**"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- 이의 입법취지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성별 균형 참여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균형있게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, 그 긍정

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

□ 안 제12조(구성) 제2항

○ “공동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**담당국장**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” 고 규정하고, 같은조 제3항과 제5항에서는 각각 “부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**과장급 공무원**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”, 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**팀장**이 된다” 명시하고 있는 바,

-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동 조례의 소관부서가 기존의 복지건강실에서 시민건강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공동위원장은 본부장에서 국장으로, 부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, 간사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되는 것임

□ 안 제12조(구성) 제4항

○ “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명과 **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또는 식품안전, 소비자 및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**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” 고 규정하는 바,

-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나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·조정을 하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회 위촉위원의 선발에 있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

- 또한 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「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“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”기능도 대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함

□〔신설〕안 제13조의 2(위원의 위촉 해제)

○ 신설된 안 제13조의 2는 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는 바,

-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을 마련한 것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